

인천광역시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2. 10(월)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4. 1. .
- 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14. 2. .
- 라. 상정일자 : 2014. 2. 10.(제213회 임시회 제1일차 건설교통위원회)
 - 제안설명 : 도시계획국장 하 명 국
 - 검토보고 :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임 현 기
 - 질의 및 토론
 - 월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폐지이유

- 「토지구획정리사업법」(폐지법률 제6252호, 2000.7.1. 시행)에 따라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, 사업이 완료된 지구의 시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사업이 완료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함.
- 사업이 완료된 다른 조례의 폐지(안 부칙 제2조)
 - 1) 인천광역시도시계획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
 - 2) 인천광역시도시계획문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

- 3) 인천광역시도시계획청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
- 4) 인천광역시도시계획학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
- 5) 인천광역시도시계획연희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
- 6) 인천광역시도시계획연희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
- 7) 인천광역시도시계획연희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별다른 이견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제명을 “시행조례 등”으로 해야하는 것 아닌가? (전원기 의원)
 ⇒ 법무담당관실 검토 시 부칙에 타 조례의 폐지 조항을 담는 것으로 조정되었음.

5. 토론요지

- 가. 찬 성 : 이도형, 이재병, 김병철, 정수영, 이재호, 전원기, 전용철 의원
- 나. 반 대 : 없 음.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위원 7, 찬성 : 7명)

7. 기타

- 특이사항 없음

붙임 1. 인천광역시도시계획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폐지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도시계획선헌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도시계획선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.

1. 인천광역시도시계획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
2. 인천광역시도시계획문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
3. 인천광역시도시계획청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
4. 인천광역시도시계획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
5. 인천광역시도시계획연희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
6. 인천광역시도시계획연희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
7. 인천광역시도시계획연희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